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80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5. 10.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24. 05. 13.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24. 05. 31.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행정과장 최낙창)

가. 개정이유

○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위원 정수를 현실화하고, 위원 선정 전 사전 교육 이수 및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의 의무화 등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 반영하여 주민자치회의 자율성 강화 및 활성화 제고

나. 주요내용

1)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현실화(안 제5조)

2) 주민자치회 위원 교육 자율화(안 제7조)

3)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자율화(안 제17조, 제19조)

4)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안 제21조의2, 제22조, 제24조)

5)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2)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3) 협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특이사항 없음[복지지원과-12758(2024. 3. 25.)호]

4) 기 타

- 입법예고: 고성군공고 제2024-582호

. 예고기간: 2024. 3. 25.(월) ~ 2024. 4. 15.(월)

. 예고결과: 의견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신 · 구조문대비표: 붙임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장혜정)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시행: 2023. 7. 10.)으로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자치 운영에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의무 조항 등을 개정하여 내실있는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근거법령 정비(안 제1조, 제4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현실화(안 제5조)

◦ “30명 이상 60명 이하”로 규정된 위원 정수를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현실화 하였음.

- 위원의 선정방법 및 교육 자율화(안 제7조)

◦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하던 것을 공개추첨 또는 선출하도록 하여 위원 선정방법을 다양화하고, 위원 선정 전 주민자치 기본교육과정 6시간 이상 이수 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정비하였음

-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자율화(안 제17조, 제19조)
  ◦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규정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 주민자치회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자율화 하였음
-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안 제21조의2, 제22조, 제24조)
  ◦ 위원 선정, 감사 등과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음.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제3조, 제6조, 제10조～제16조, 제18조, 제20조)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며 우리군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으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5. 토　론: 없음

6. 심사결과: 2024. 5. 31.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